

제 12 장 기타사항

12.1 기본사항

12.2 권익사항

제 12 장 기타사항

12.1 기본사항

금회 과업대상 소하천 120개소 168.128km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소하천 시설기준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상·하류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수계획을 수립하였다.
- (2) 하도의 안정을 유지함과 아울러 소하천의 양안을 보호하도록 계획하였다.
- (3) 치수계획의 규모는 전체적인 시야에서 중요도 및 안전도를 고려하여 기술적이며,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정하였다.
- (4) 충분한 통수단면 확보 및 원활한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시설물을 계획하였다.
- (5) 소하천의 자연적 형태 및 유역개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천환경 보전 및 개발을 계획하였다.
- (6) 관련된 타 사업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.

12.2 건의사항

- 본 과업구간 뿐만 아니라 인제군 전체에 치수 및 이수계획의 기본이 되는 수위·유량관측소를 설치, 유사량 측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측 및 기록보존을 통해 양질의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수문분석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.
- 이후에 실시되는 모든 소하천시설물의 공사는 본 종합계획에 의하여 수계 전체를 일관하여 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소하천관리 및 홍수피해를 최소화시킨다.
- 환경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하천공사 시 둔치와 자갈 등 생물서식 공간이 잘 발달된 곳은 잘 보전하여야 한다.

-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제방을 축조하여 보축구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또한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수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사업 시행이 동시에 많은 하천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환경계획 수립이 단일 하천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,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 시켜야 한다.
- 배수통관은 반드시 개수로가 형성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, 교량 시공시 접근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금회에 신설되는 교량은 본 계획에서 제시한 하폭 및 교량의 설치 기준에 의한 충분한 경간장과 여유고를 확보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계획 홍수위에 미달되어 우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교량은 조속히 철거 후 계획에 입각하여 재 가설하여야 한다.
- 소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원을 적극 규제하여 하천 수질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, 본 계획에서 제시한 수질보전대책을 적용하여 수질향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소하천의 수질보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천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.
- 하천수질보전 및 예측을 위하여 각 소하천별 주요구간에 대하여 계절별로 수질 측정 분석이 요망된다.(향후 사업시행 시)
-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을 유지,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형 하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.
- 소하천관리 및 재해관리를 위하여 행정단위별 관리가 아니라 당해 소하천의 고유 특성과 일관성 있는 개수계획을 위하여 수계별 하천관리가 요망된다.
- 금회 과업 시 매설된 표석은 차후 소하천공사시나 시설물 계획시 기준점이 되므로 망실이나 훼손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가 요망된다.
- 실시설계 시 같은 제방 내 다른 형식의 호안을 적용할 경우 국부세굴에 따른 호안의 포락을 막기 위해 몰탈 처리 등 대책 수립 등을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.
- 실시설계 시 제체 및 원지반에 대한 공학적 특성에 대해 원위치 및 실내시험 등

을 실시하여 계획제방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급회 계획 시 최소한의 하폭으로 계획홍수량에 대해 통수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급적 단단면 계획으로 계획하였으나, 향후 실시설계 시 복단면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통수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.
- 횡단 교량의 교각기초는 물론 날개벽 등 제체의 축조재료와 교량의 건설재료가 이질적이므로 뒷채움 부실 및 콘크리트 구조물 끝단에 작용하는 수충력으로 유실 피해 발생사례가 많으므로 시공계획 수립과 공사 시 수충력에 의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유실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소하천의 제방 및 호안붕괴는 수충부에서 많이 발생하므로, 수충부의 호안공법 선정 시 주위를 요하며, 향후 사업시행 시 제조건(유속, 소류력 등)을 재검토하여 수제 도입이 가능한 하천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여 유속에 따라 제방 및 호안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향후 사업 시행 시 자연림에 위치한 소하천의 경우 자연경관과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- 실시설계 시 하상경사가 1/100이상의 급경사 구간에서 호안형식 선정 시 유속 및 하상재료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.